(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249호

『2023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3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1. 2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도내 영상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공 고 명**: 2023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2차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2023년 회계연도 기준)

○ **접수기간**: '23년 11월 29일(수) ~ 12월 13일(수) 18:00까지(14일간)

○ **지원대상**: 아래 분야 중 도내 5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원 이상(2023년 1월 1일 이후 기준)

※ 웹 드라마, 해외(방영/개봉) 다큐멘터리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 소비액 5백만 원 이상

분야	구분	지원내용	비고
'가'형 (제작비 10억 이상)	1. 극장 개봉 확정 장편극영화 2. 지상파, 종편, CATV, 유료 OTT 플랫폼 방영(편성) 확정 드라마(해외 작품의 경우 다큐멘터리 포함)	도내 소비액의 30%, 최대 50,000천원 지원	1. 총 사업예산 2. 부가세 제외 금액만 산정
'나'형 (제작비 10억 이하)			

○ 상세기준

구분	상세기준
신청대상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 해외 작품의 경우 한국 측 진행 프로덕션 및 프로듀서
제외대상	1.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4.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또는 영화인 신문고 등을 통해 각종 분쟁 중인 피신고인 5.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지원 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6. 작품 내 시나리오, 음원, 상표권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 중인 경우 7. 촬영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주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 경우 8.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제외/웹 드라마의 경우 무료 OTT(ex: youtube) 채널에만 업로드 하는 경우 제외 9. 이미 방영되거나 개봉되는 등 공개가 완료된 작품 제외(방영개봉 중인 작품 포함)

※ 본 사업 목적상 국내 다큐멘터리, 인포테인먼트, 지역 TV 프로그램,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제외

○ **선정방법**: 접수기간 종료 후 정량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 배정

구분	선정순(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에 따른 도내 소비 총액 기준)
우선순위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장기 임대(30일 이상) 촬영작품
2순위	**'나'형** 도내소비액 **1순위** 작품
3순위	**'가'형** 도내소비액 **1순위** 작품
4순위	**'나'형** 도내소비액 **2순위** 작품
5순위	**'가'형** 도내소비액 **2순위** 작품
⋮	⋮
기타사항	• **접수 시 제출한 도내 소비금액과 차후 제출한 정산자료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최하 순위로 재배정** **※ 단, 정산금액 증빙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변동 사항은 오차범위 ±10% 이내로 순위 인정**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① 도내소비액 > ② 촬영회차순 (①항목 동일시 ②번 적용) • 접수작품이 1편인 경우: 지원대상 자격 여부만 검토 후 선정

3. 신청접수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접수처(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

☎ Tel : 064-735-0627 / ✉ E-mail : chae2836@ofjeju.kr

○ **신청절차**

1단계 (지원자격 검토 및 정량평가 단계)	▶	① 지원문의 예산 현황 확인 및 지원 자격 등 문의	▶	② 신청접수 및 정량평가 자료 제출 • 신청서 접수 • 정량평가 자료제출 ※ 하단 제출서류 항목 참조	▶	③ 정량 평가 • 자격요건 서류 검토 • 평가자료 검토
2단계 (순위 배정 및 증빙자료 검토단계	▶	⑤ 정량평가 결과 통보 • 순위 배정 및 안내 ※ 작품별(개별) 안내 • 접수마감 후 2~3주간 정량평가 진행	▶	⑥ 증빙자료 제출 • 우선순위부터 안내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21일 이내) ※ 하단 제출서류 항목 참조	▶	⑦ 협약체결 및 지원금 청구·지급 • 성과 활용 등의 협약 체결 • 협약에 따라 지원금 확정 및 청구·지급

○ 유의사항

-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 부적격 제작사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잔여 예산이 인정액을 충당치 못할 수 있음
- 2023년 01월 01일부터 접수일까지 도내 소비액만을 인정함
  ※ 접수 이후 촬영분(회차, 도내소비액 등)은 불인정함
- 서류 미비, 누락 등 첨부서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접수 불인정
- 선정 이후로부터 21일 이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취소 처리(단, 재신청은 가능하며, 기접수 내역은 제적 처리)
- 항공 및 선박료는 제외
- 최종지원금은 원단 위 이하 절사 후지급(소수점 삭제)

4.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단계 - <지원 자격 증빙자료 및 정량평가 자료>
1. 지원신청서 1부(직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붙임1, 2」 2. 범죄 위반 등의 확인서 : 「붙임3」 3. 사업자등록증(제작업 신고 증빙용) 4.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신청서 직인 기준) 5.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 플랫폼 편성 계약서 1부 6. 도내소비액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공인 회계감사보고서 1부 ■ 공인회계정산서 참고사항 · 회계사나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게 도내 소비 거래 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을 뜻함 · 제출한 회계정산서의 인정액은 진흥원에서 실제 지급할 금액이 아니며, 회계정산서는 영상 촬영으로 인한 도내 소비액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절차 서류임 7. 제작기획서(제작의도, 시놉시스, 배급・편성계획, 투자 및 배우캐스팅 등의 내용) 8. 참여 스텝 리스트(숙박료 증빙 관련 서류) 9. 최종본 시나리오와 도내 촬영 내용 발췌(올-로케이션 작품인 경우 발췌 생략 가능) 10. 제주 내 일일촬영계획표(회차별 사진 첨부) 11. 도내 소비액 예산서(진행비, 임차비 등 항목 구분해서 표로 제출) - 「별지1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

○ 정산 내역 제출 시 제출서류(선정완료 이후 15일 이내 제출)

2단계 - <선정작품 정산자료 제출서류>

1. 법인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제작비 지출 카드 앞면 복사본(유효기간 제외)
   ※ 카드지출 없을 시 불필요
2. 정산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별지1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

카드지출	▶ 카드매출전표(제주 사업자 표기 된 내역만 인정/유흥, 일반주점, 주류, 담배 등 불인정) ▶ 도내소비액 예산서와 맞추어 매출전표별 번호 기입 후 사본 제출	
계좌이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거래 시	개인과의 거래 시
	▶ 사업자등록증(제주 소재만 인정)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수령 기업(대표자) 통장 사본 ▶ 계약 내용 증빙 서류	▶ 신분증 사본(제주도민만 인정) ▶ 원천징수영수증(소득신고 필수) ▶ 계좌이체 확인증 ▶ 수령인 통장 사본(신분증 기준) ▶ 계약 내용 증빙 서류
기타사항	▶ 현금거래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필수 ▶ 미제출 된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개인 현금 영수증 불인정	

※ 정산내역 서류 중 증빙적 해석이 어렵거나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최하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

▶진흥원에서 정산자료 검토 후 최종지원금 통보 시 협약 단계 진행

▶협약 이후 지원급 지급 시 제출서류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서(발급 유효기간 인정범위)
3.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유효기간 인정범위)
4. 통장사본

5.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사항의 조율

○ 작품 활용 및 조건에 대한 협약 체결 주요 내용

- 지원작품(영상물)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흥원 홍보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비상업적 용도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흥원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을 통한 제작 지원 사항 표기
- 도내 촬영 메이킹 클립(영상·사진) 등의 활용 협력(배우 초상권 동의 사항 협력)
- 기타 영상물 제작 지원 및 활용에 관한 협의 사항

※ 위 사항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협약체결 진행 불가(지원금은 협약 이후 집행)

○ 사후관리 주요 내용

- 개봉 또는 방영 후 도내 제작과정에 대한 홍보 협력
- 장편극영화의 경우 개봉 전 시사회, 도내 시사회 개최 등에 관한 협력
- 촬영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초청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협력

※ 위 사항은 협약 과정 중 상호협의 후 조율

6. 협약의 해지

○ 협약은 다음 각 사항에 따라 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1. 관리기관과 신청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협약을 통해 지정한 기간 내에 작품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신청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협약 이후 지원 제외대상이거나 자격이 불충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접수자(제작사 등)에게 있음

○ 협약사항 불이행 시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 참여 제한 기준일 : 협약 해지일로부터 2년간